

◎ 건설교통부령 제371호
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

1. 개정이유

종전에 관보·일간신문 등의 인쇄매체에 공고하던 건설업의 등 록신청 및 양도·합병 등의 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종전에는 건설업 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신청 및 양도·상속·합병신고 등의 수리를 한 경우 관보·일간신문 등의 인쇄매체에 공고하였으나, 앞으로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도록 함(제8조 제1항·제10조의 2 제4항·제18조 제7항·제19조 제4항 및 제20조 제4항).
- 나.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하는 경우 상호명, 주된 영업소 소재지, 건설업등록번호, 시공능력평가액, 건설업종별·전문분야별 공사실적, 기술자보유인원 등을 공시하도록 공시항목을 구체화함(제24조 제1항 신설).

다. 종전에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건설업자가 납입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불입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였으나, 앞으로는 퇴직공제불입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(별표 1 및 별표 2).

3. 시행일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 제1항·제10조의 2 제4항·제18조 제7항·제19조 제4항 및 제2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

부동산 등기필증이 없어졌을 때의 등기신청 방법은?

대문이... 열렸어? 도, 도둑? 도둑이야! 어디 댕어, 등기필증? 등기필증이라뇨? 땅문서 말야! 이사올 때 당신이 챙기지 않았어요? 큰일났네. 땅문서 없으면 땅도 못 팔고, 재판도 받아야 된다고!

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, 등기필증은 속칭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완료 후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에 등기를 마친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



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.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부동산을 판 등기의무자 본인이나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등기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분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의 출석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.

등기필증 재교부 안 되나요? 등기의무자 본인이요? 대리인인데요! 위임장과 공증서를 첨부해요. 지문 확인 해봐?!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나 거래시 필수적이므로 등기와 관련된 서류는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.

용어해설(등기의 효력)

추정력: 일정한 내용의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 그 기간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후부터 말소될 때까지이다.

물권변동: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의 사실은 서류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등기부에 기재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순위확정력: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에 따른다.

공신력: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. 따라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.

〈법 명언 한마디〉

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를 저울질하는 저울을 쥐고 있으며, 다른 한 손에는 권리를

실제로 주장하는 칼을 쥐고 있다. 저울을 못 갖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으며, 반대로 칼을 못 갖고 저울만 가져 보았자 강제적인 힘이 없는 만큼 무력한 것이 되고만다.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.

- 예링의 [권리를 위한 투쟁] 중에서